

보도시점 2025. 12. 30.(화) 조간  
2025. 12. 29.(월) 12:00

배포 2025. 12. 29.(월)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25.12월 기준(잠정) 기금규모 약 1,473조 원, 수익률 약 20%로 역대 최대 성과 -
-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노후소득보장 동시 강화 기대 -

**【관련 국정과제】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한눈에 요약**

##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 12. 29.  
보건복지부

### 보험료를 조정

2025년	2026년
9%	<b>9.5%</b>

### 소득대체율 인상

2025년	2026년
41.5%	<b>43%</b>

### 출산 크레딧 확대

2025년	2026년
둘째부터 12개월	<b>첫째부터 12개월</b>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2025년	2026년
최대 6개월	<b>최대 12개월</b>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2025년	2026년
납부 재개자 (19만3천명)	<b>월 소득 80만원 미만</b> (73만6천명)

###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2025년	2026년
월 소득 309만원 초과 시 감액	<b>월 소득 509만원 이상 시 감액</b>

\* 2025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기준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12월 잠정치 기준)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

\*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26.2월 발표 예정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21.4%)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現 장기추계 4.5% → 목표치 5.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25~) 등 자산 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 보험료율 9% → 9.5%

보험료율이 9% → 9.5%(+0.5%p)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상세내용 후술).

## ② 국민 신뢰 제고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제3조의2)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청년 등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강화 : 소득대체율 41.5%\* → 43%

\* 제도 변경 전 소득대체율(%) : ('26) 41.0 → ('27) 40.5 → ('28년 이후) 40

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40년 가입 기준).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청년층 지원 확대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08~).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 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 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 ('25) 19.3만 명 → ('26) 73.6만 명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⑥ 현 세대 어르신들의 실질노후소득 제고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개선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5년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수급자 소득 - A값)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16%, '23년 기준 496억 원) 대상자가 집중(65%, '23년 기준 9.8만 명)되어 있는 1~2구간('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예시) 월 소득 350만 원 → 1구간 해당(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 법 개정 前에는 A값 초과 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0,500원이 감액 →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를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 국민연금 소식은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Q&A

담당 부서  <총괄> <보험료 지원>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6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2-3613)
		담당자	사무관	조연희 (044-202-3609)
<기금운용>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	담당자	과 장	백진주 (044-202-3650)
		담당자	사무관	신현준 (044-202-3652)
<크레딧>  <노령연금 감액>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책임자	팀 장	양명철 (044-202-3630)
		담당자	사무관	강재희 (044-202-3631)
		담당자	사무관	원혜준 (044-202-3632)



1. 국민연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 1
2.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 2
3.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액만 늘고,  
미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3
4. 청년들을 위한 크레딧 지원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4
5.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5
6. 미래에는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지? .. 6

# 1. 국민연금,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 주요 내용은 5가지입니다.

❶ (보험료율) 월 소득의 9 → 9.5%로 조정

\* 매년 +0.5%p씩 '33년 13%에 도달('26년 9.5% → '27년 10% → ... → '33년 13%)

❷ (지급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시책 수립의무 → 지급보장 의무)

❸ (소득대체율) '25년 41.5%\* → '26년부터 43%로 인상

\* ('07년 개혁) '08년 60 → 50%, '09년부터 매년 △0.5%p씩 '28년 40% 도달

❹ (크레딧) 출산은 첫째도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는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❺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일정 소득수준(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 확대

❻ (감액제도 개선)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25년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 감액

→ 일하는 어르신의 실질소득 제고를 위해 1·2구간 폐지

###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비교 |

(월 소득 기준)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9만원)

현행			→	개정	
구간	A값 초과소득월액	월감액 금액			
1	10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	감액 X	기존과 동일
2	100만 ~ 200만원 미만	5만 ~ 15만원 미만			
3	200만 ~ 300만원 미만	15만 ~ 30만원 미만			
4	300만 ~ 400만원 미만	30만 ~ 5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A값(평균소득월액)은 매년 변동
-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적용
- 감액 적용 기간은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
-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 2.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 ① (보험료율) 월 소득의 9 → 9.5%로 조정됩니다.

\* 매년 +0.5%p씩 '33년 13%에 도달('26년 9.5% → '27년 10% → ... → '33년 13%)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13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오른 146,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2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 같은 소득수준의 지역가입자는 15,400원 전액 본인 부담. 다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 경감

### ② (소득대체율) 본인 평균소득의 41.5 → 43%로 인상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2026년부터 40년을 가입하는 경우,

- 기존\*에는 月 123.7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앞으로는 9.2만 원 인상된 月 132.9만 원(43%)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40년 가입 기준).

\* 기존 소득대체율(%) : ('26) 41.0 → ('27) 40.5 → ('28~) 40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 게만 적용(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되며,

-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현재 수급자들의 연금액만 늘고, 미래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를 연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소득대체율에서 '소득'이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되며,
-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4. 청년들을 위한 크레딧 지원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크레딧이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08년부터 시행).

-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였으나(상한 50개월),
- 앞으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상한도 폐지되어 아이를 낳는 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이 확대됩니다.

< 출생 크레딧 인정기간 >

(단위: 명, 개월)

인정기간 \ 자녀수	1	2	3	4	5	6
현행	-	12 (+12)	30 (+18)	48 (+18)	50 (상한)	
개혁('26~)	12 (+12)	24 (+12)	42 (+18)	60 (+18)	78 (상한 없음)	96 (상한 없음)

- 군 복무를 한 청년은 기존에 최대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합니다.
-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되면 생애에 걸쳐 약 +787만 원, 군 복무는 약 +590만 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 평균소득자 기준, 40년 가입·25년 수급 가정

-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소득활동 공백 보상을 위해 가입 인정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5.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 정부는 휴직·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예시) 월 소득이 79만 원인 지역가입자 : 37,525원( $790,000 \times 0.095 \times 0.5$ )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 내년 지원 대상도 올해 19.3만명에서 73.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지원 예산도 '25년 대비 58% 늘어난 824억 원(+304)입니다.
  -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 미래에는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지?

- 연금 지급은 국가와 국민 간 약속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만을 두고 있었으나,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